



[ 2018. 12. 6.] [ 1113 , 2018. 12. 6., ]

( ) 044 - 201 - 3257

1

1 ( ) 「 」, 「 」, 「 」  
「 」 .

2 ( )

1. " " ( " " )

2. " " 「 」 ( " " ) 16  
「 가 」 ( " " ) 2 6  
가 .

3. " " 가 ( " " )

4. " "

5. " " 가 2  
( " " )

6. " "

7. " "

8. " "

9. " " ( )

10. " "

11. " " 「 가 」 38 1 3 가 500 가  
가 300 .

12. " " 가 가 300 .

13. " "
14. " " 1
15. " " 20  
 , 「 」
16. " "
17. " "
18. " "
19. " "
20. " " 「 」 11 4 1 ( )  
 ) ( )
21. " " 「 」 11 4 1 ( " "  
 ) 가 가 가,
22. " " 가
23. " "
24. " " , ,
25. " "
26. " " 8 2 1 4 , 7 1 3 4 ,  
 가 ' 82 ' ' 83 ' ,  
 , 「 」
- 5 3 1
27. " " . .

- 3 ( )
- 1.
  - 2.
  3. , , ,
  - 4.
  - 5.
  - 6.

---

7.

8.

9.

10.

11.

2

4 ( ) 「 」 ( " " ) 5

2 2 "

" , , , , , , , , , ,

6 5 ( " " )

5 ( ) 6 6

1. : ,

2. :

3. :

가 8

1

6

6 ( ) .

가 ( " " )

1.

2. 4 5

3.

4.

---

5. 「 가 가 」 7 8 가

6.

7.

8.

7 ( ) ,  
5 ( " " ) ,  
가 가 ( " " )

1. , . 가

2. 6 2 1 5

3.

4.

8 ( ) 18 , 5 ( " " )

1. 20 2 ,

2. 「 가 」 38

3. 6 2 4

4.

5.

6.

15

9 ( ) 5 ( " " ) 13  
9 2

10 ( )

11 ( )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가

7. ( , )

8.

가 2

---

12 ( )

2 16

- 1.
- 2.
- 3.

13 ( )

2 18

1

12 3

3

14 ( )

가 50

( "

" )

1

가 50

가

1

「

」 12 2 4

가

가

1

가

---

4

1. ,
2. ( .)
3. 가
- 4.
- 5.
- 6.
7. , , ( 4 2 .)
8. ( ) ( ) , 「  
」 14 「 가 」 102

15 ( ) ( " " ) 6 1 3  
1 12 ,

- 1.
- 2.
3. ,
4. 14 6
- 5.
6. ,
7. 2

13

16 ( )

---

2

2

1

17 ( )

16

2

1

10

2

가

, 19

18 ( )

17 4

20 1

( " " )

) ( " " )

1

2

가( )

1

19 ( ) 가

16 17

18 1

20 ( )

가

8 1

, 가가 ( " " )



---

가 , , .  
1 2

가 , ( ) ,  
15 2 .

21 ( ) 「 가 」 38 ( " )  
" )  
1 「 」 .

22 ( )  
1 가  
4

23 ( ) 5 1  
16  
1 4 1 1 3 13  
5 2  
1

24 ( ) 5 1  
30  
1.  
2.  
3.  
4. 가

---

5. . 가

6. 24 4

7.

1

1. 가 .

2.

3. 가 가 가

가

1

6 3 가

( " 가 " )

1

1. 가 가 1 1

2. 가 가

3.

1 4

1

. , 가

25 ( )

1

1.

2.

3. 가

4.

5. ( )

6.

7. , , 가 , 가

8.

9. 24 4

, 가

3

26 ( 가 ) 「 」 ( " " ) 4 6

가 5 , 가 3 2  
가 가

1 2 가 .

27 ( ) 25 1

4 가 가 ,

40 1 가 가 .

가 가 . ,

11

1.

2. 가

3. , .

4. 가 (

가

)

5. 25 2 9

6. .

7. . 가

8.

9. , 가 ( 24 1 1

가 )

10.

11. ( 1

)

12.

가 1 3 가

, 4 8 11 가 9

10

1. 3 35 1 2 가

---

2. 3

17 9

3. 3

4. 3

5.

6. 3

7. 「 가 」 14 「 가 」 102

가 ( )

8. 「 가 」 19 (

)

9. 「 가 」 10

10.

11. 가

3

30 1

( " " ) 가 가

1

1

가

, 가 ( 가 가 ) 가 가  
가

10

2

5

가

가

1

, 4

5

2

3

4

25

1

가

7

가

1

가

4

5

가

11

가

60

(

60

)

---

1. 11 가 가 60

2. 12 가 가 60

3. ( ) 가 가 가

28 ( )

15 25 1

8

가

2

( " )

" )

1 25 2

29 ( )

9

( " " ) ,

가

1.

2.

3.

4.

5. (

)

6.

7.

8. 가

9.

10.

11.

12.

13. ( )

14.

---

15. 29 ( " " )

16. 「 」, 「 」

17.

. ( )

, 1 .

2

.

, . 2

.

1

가

5 1 18 34 ( " " ) 1

.

.

30 ( ) 27 8 2

.

31 ( ) 가

1. 가

2. . .

3. , 가 가

4. 가

1

,

---

32 ( )

가

1. 11 1

2.

1

가

1

2

5

가

33 ( )

, 가

1

34 ( )

, 가

30

,

30

45

, 가

가

45

2

1.

2.

3.

4.

5.

6. 가

7.

8. 가 .

가 2 35 2  
2  
4 3

1 2 ( ) .

35 ( 가) 34 1  
가( 가)  
30 , 가 가

34 2  
가 가  
가 가  
가 가 1 2 가

1 3 가, 가 가 8 1 2 , 4  
가 가 , 가 가  
가 .  
1 2 가 ,

3 가( 34 3 4 21  
) .

1 가  
, ( ), , ( 가 ) 가  
가 .

36 ( 가 ) 35 1 가 가  
, 가



---

1. 가 가

2. 가 60  
35 7 가

1. 가

2. 35 2 가 가

1. 가 가 10 , 가 90 ( " "

2. 가

3. 가 가  
35 1 2 가 가

35 1 2 가

3

3 가

1.

2.

3.

1 4

37 ( )

38 ( ) 24 2 ( "  
" ) . ,

- 1.  
2.  
3.  
4.

가

39 ( )

1

가

- 1. 25 16  
2.

1

2

40 ( 가 ) 4 1 2 "  
가" 가 .

- 1.  
2.  
3.  
4.  
5.

10

5

1

4 1

가

3

3

---

7 가 가

41 ( 가 ) 27 6 가 .

1 가 .

27 1

, 가  
가

42 ( 가 ) 27 5 2 가

8

43 ( ) 27 ,

35 가 , 32

27

10

44 ( ) 가 .

45 ( ) 2

2

46 ( ) 「 . 」 ( 334 )

2019 1 1

3

( 3

12 31

)

---

< 1113 ,2018.12.6.>

1 ( )

2 ( ) 27 2

3 ( )

4 ( )

6

7

5 ( )

(

510 , 2015.4.6.,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기준 (제27조제9항 관련)**

1.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정책적·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2.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9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삭 제>
- 다. 최근 3년 이내(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바.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한다)
- 사.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한다)
- 아.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참여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 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차.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카.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

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술수요조사서

<b>00</b>	<b>제안 과제명</b>	
-----------	---------------	--

**□ 기획과제 개요**

목표	
필요성	※ 추진 필요성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기술동향, 시장동향, 정책동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 ○ - *
--

**□ 주요 연구내용**

○ - *
-------------

**□ 추진 방안**

○ - *
-------------

**□ 추정 기간 및 비용**

기획연구 비용 및 기간	000 백만원, 00개월
총 사업비 / 사업기간	00 억원(정부출연금 : 00 억원, 민간 : 00 억원) / ' 00 ~ ' 00

**□ 기존의 선행연구(해당시 기재)**

연번	선행 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1				
2				
3				

**□ 제안자 인적사항 등**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연락처	010-0000-1234 031-0000-1234
		E-mail	

\* 본문은 최대 4페이지로 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로 4페이지까지 <첨부> 작성 가능



## 사전검토표

사업(과제)명	제안기관	제안자

### 1. 검토대상 여부

검토 대상	검토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기존연구와 중복 <input type="checkbox"/> 제안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추진 필요성 판단 불가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낮음

### 2. 검토결과

기획연구 추정 기간 및 비용	종합점수
기 간 : 00개월 연구비 : 00백만원	

※ 기획연구 필요시 기획기간 및 기획연구비 기재, 불필요시 기간 및 연구비 기재할 필요 없음

### 3. 항목별 세부 검토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해당란에 "0" 표시)			점수	검토의견
		상	중	하		
1. 필요성	1-1. 사업추진 필요성					
	1-2. 정부지원 타당성					
	1-3. 정부정책 부합성					
2. 기술성	2-1. 기술적 타당성					
	2-2. 기술적 진보성					
	2-3. 기술의 차별성					
3. 시장성	1-1. 미래 시장규모					
	1-2. 시장경쟁 가능성					
	1-3. 시장 진입시기 적절성					
	1-4. 국내외 실용화 가능성					
합계(평균 점수, 100점 만점 환산)						

\* 상, 중, 하 세부 검토결과에 따른 점수는 검토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여(필요성, 기술성 및 시장성 각 100점 만점)